

2025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세제개편안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 미래전략산업 지원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 지역성장 지원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상생협력 지원
-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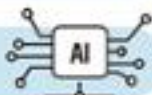


-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과세체계 합리화
-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1 AI·반도체 산업 지원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제지원 신설	○ (세부기술) ① 생성형 AI 기술, ② 에이전트 AI 기술, ③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④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⑤ 인간 중심 AI 기술 ○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AI 우수인력 등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내용)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 (내용)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 연장 ○ (지정기간) 최대 3년→10년

2 K-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 신설	○ (내용) 웹툰 등 제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내용)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상향* * (현행) 10%(중소 15%, 대 5%) → (개정) 10%(중소 15%)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내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3 해운·방위산업 지원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운송· 이동수단 분야 세제지원 확대	○ (세부기술) ①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선박/선설) ②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자동차/선설) ③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자동차/확대) ④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자동차/확대) ○ (사업화시설) ①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선박/선설) ②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자동차/선설)												
우수 선화주기업 세제지원 개선	○ (내용) <table border="1"> <tr> <th data-bbox="330 2702 378 2742">구분</th><th data-bbox="378 2702 650 2742">현행</th><th data-bbox="650 2702 874 2742">개정안</th></tr> <tr> <td data-bbox="330 2742 378 2852" rowspan="2">기본 공제</td><td data-bbox="378 2742 650 2852">요건 총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td><td data-bbox="650 2742 874 2852">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 이상</td></tr> <tr> <td data-bbox="378 2852 650 2942">금액 국적선사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비용의 3%</td><td data-bbox="650 2852 874 2942">국적선사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0.5%</td></tr> <tr> <td data-bbox="330 2942 378 3032" rowspan="2">추가 공제</td><td data-bbox="378 2942 650 3032" rowspan="2">《신설》</td><td data-bbox="650 2942 874 3032">요건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 이상</td></tr> <tr> <td data-bbox="650 3032 874 3132">금액 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해상운송비용의 1%</td></tr> </table>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구분	현행	개정안	기본 공제	요건 총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 이상	금액 국적선사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비용의 3%	국적선사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0.5%	추가 공제	《신설》	요건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 이상	금액 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해상운송비용의 1%
구분	현행	개정안											
기본 공제	요건 총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 이상											
	금액 국적선사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비용의 3%	국적선사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0.5%											
추가 공제	《신설》	요건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 이상											
		금액 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해상운송비용의 1%											
방위산업 세제지원 확대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및 관련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												

4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선



- (공제구조) 사후관리 방법을 고용 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방식에서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 방식으로 전환

현행					개정안				
구분	1인당 공제액(단위:만원)				구분	1인당 공제액(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2년)			중소(3년)	중견(3년)	대(2년)	
우대*	수도권 1,450	지방 1,550	800	400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기본	850	950	450	-	기본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
						3년차 1,000	1,300	500	-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공제요건) 최소 고용증가 인원(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초과분만 공제
- (사후관리) 고용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는 유지*
* (현행) 고용 일부 감소시 고용이 감소한 해부터 공제 전액 배제
- (추가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6.12.31.)
*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1 자본시장 활성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지원 신설	○ (내용)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대상에서 제외 <table border="1" data-bbox="1159 2055 1722 2215"> <tr> <td>요건 (1) and (2)</td> <td> 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 ② 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td> </tr> <tr> <td>대상</td> <td>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td> </tr> <tr> <td>세율</td> <td>①현금배당액 14%, ②현금배당액 20%, ③배당소득 35%</td> </tr> </table> ○ (적용기한) '26~'28년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소득분	요건 (1) and (2)	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 ② 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대상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세율	①현금배당액 14%, ②현금배당액 20%, ③배당소득 35%									
요건 (1) and (2)	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 ② 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대상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세율	①현금배당액 14%, ②현금배당액 20%, ③배당소득 35%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제도 개선	○ (내용)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비율 상향 <table border="1" data-bbox="1159 2339 1722 2508"> <tr> <th colspan="2">구분</th> <th>현행</th> <th>개정안</th> </tr> <tr> <td colspan="2">환류대상</td> <td>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td> <td>(좌 등) + 배당</td> </tr> <tr> <td rowspan="2">기업 소득 비율</td> <td>투자모집률</td> <td>60~80%*</td> <td>65~85%</td> </tr> <tr> <td>투자재의형</td> <td>10~20%**</td> <td>20~40%</td> </tr> </table> * 시행령에서 70%로 규정 / ** 시행령에서 15%로 규정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구분		현행	개정안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좌 등) + 배당	기업 소득 비율	투자모집률	60~80%*	65~85%	투자재의형	10~20%**	20~40%
구분		현행	개정안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좌 등) + 배당													
기업 소득 비율	투자모집률	60~80%*	65~85%													
	투자재의형	10~20%**	20~40%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예금, 한화채(RP) 등 원화표시 자산 투자 시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2 벤처투자 지원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 (내용)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 시 법인세 추가 공제를 상향(기본: 5%, 추가: 3~5%) <pre> 투자자(내국법인) → 출자 → 민간 벤처모펀드 → 출자 → 벤처자펀드1, 2, 3 → 벤처기업 등 (80% 이상 출자 필요) </pre>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 (내용) ①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②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출자에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 적용 <pre> 투자자(내국법인) → 출자 → 벤처투자조합 → ① → 벤처기업 등 (80% 이상 출자 필요) </pre>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3 지역성장 지원

고향사랑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 <table> <tr> <td>2,000만원 이하 15%</td><td>2,000만원 이하 15%</td></tr> <tr> <td>10만원 이하 100/110</td><td>20만원 이하 40%</td></tr> <tr> <td></td><td>(최종)</td></tr> </table> (현행) (개정안)	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이하 15%	10만원 이하 100/110	20만원 이하 40%		(최종)																												
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이하 15%																																		
10만원 이하 100/110	20만원 이하 40%																																		
	(최종)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공제구조)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기간 확대 <table> <tr> <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낙후지역¹⁾</th><th colspan="2">그 외 지역</th></tr> <tr> <th>현행</th><th>개정안</th><th>현행</th><th>개정안</th></tr> <tr> <td>수도권 연구감소 지역</td><td>5년 100% +2년 50%</td><td>5년 100% +3년 50%</td><td colspan="2">〈 감면 없음 〉</td></tr> <tr> <td>수도권 연접지역²⁾</td><td>5년 100% +2년 50%</td><td>5년 100% +3년 50%</td><td>5년 100% +2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 <tr> <td>지방광역시</td><td>7년 100% +3년 50%</td><td>7년 100% +4년 50%</td><td>5년 100% +2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 <tr> <td>중규모 도시³⁾</td><td>7년 100% +3년 50%</td><td>10년 100% +5년 50%</td><td>5년 100% +2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 <tr> <td>그 외</td><td>10년 100% +2년 50%</td><td>10년 100% +5년 50%</td><td>7년 100% +3년 50%</td><td>7년 100% +4년 50%</td></tr> </table> 1, 낙후지역: 연구감소지역, 성장축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2, 수도권 연접지역: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황성군 3, 중규모도시: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구분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수도권 연구감소 지역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 감면 없음 〉		수도권 연접지역 ²⁾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 도시 ³⁾	7년 100% +3년 50%	10년 100% +5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10년 100% +5년 50%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구분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수도권 연구감소 지역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 감면 없음 〉																																
수도권 연접지역 ²⁾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 도시 ³⁾	7년 100% +3년 50%	10년 100% +5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10년 100% +5년 50%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공제요건) 투자·고용 수준에 따른 감면한도* 설정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내용) 아시아문화중심지, 금융중심지 등 지방 경제산업 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 확대

○ (내용)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자녀당 50만원 상향
(최대 100만원)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자녀당 25만원 상향(최대 50만원)

구분	현행	개정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자녀1인 +50만원, 자녀2인 이상 +1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1인 +25만원, 자녀2인 이상 +50만원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초등 1~2학년
여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신설

수업료 등 공립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급식비 및 교과서 대금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여체능 학원비

(자.도)

(현행) (개정안)

교육비
특별세역공제
소득요건 폐지

교육비의 15% 세역공제(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원 한도)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자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소득요건 폐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세대주 (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	부부 각각 공제 허용
주택 (면적기준)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
한도	연 1천만원	부부합산 연 1천만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내용)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4→3%) 및
퇴직소득을 장기 연금 수령 시 감면 강화(20년 초과 시 연금과수령의 50%)

상호금융 여탁금·
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 (내용)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
('26년 5%, '27년 이후 9%) 적용

구분			현행	개정안
농협 수협 산협조합	조합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저율 분리과세
	준조합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저율 분리과세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회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저율 분리과세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2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상생협력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업추비 손급 확대	○ (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 2배 상향(10→20%)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기준금액 상향	<table> <tr> <th>구분</th><th>현행</th><th>개정안</th></tr> <tr> <td>대상</td><td>연간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창업중소기업</td><td>1억 4백만원 이하</td></tr> <tr> <td>지원</td><td>50~100% 소득세·법인세 감면</td><td>(좌 동)</td></tr> </table>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연간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창업중소기업	1억 4백만원 이하	지원	50~100% 소득세·법인세 감면	(좌 동)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연간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창업중소기업	1억 4백만원 이하								
지원	50~100% 소득세·법인세 감면	(좌 동)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내용) 입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

관세 중복조사 금지 대상 합리화	관세조사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 대상(기간 및 범위)을 중복조사금지 대상으로 규정												
관세 조사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관세조사 사전통지기간을 조정하고, 사전통지 예외 조사의 당일통지 및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통지 의무화 <table><tr><th>구분</th><th>현행</th><th>개정안</th></tr><tr><td>일반 조사</td><td>조사 15일 전</td><td>20일 전</td></tr><tr><td>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td><td>조사 15일 전</td><td>7일 전</td></tr><tr><td>사전통지 예외</td><td>〈신 설〉</td><td>당일통지</td></tr></table>	구분	현행	개정안	일반 조사	조사 15일 전	20일 전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	조사 15일 전	7일 전	사전통지 예외	〈신 설〉	당일통지
구분	현행	개정안											
일반 조사	조사 15일 전	20일 전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	조사 15일 전	7일 전											
사전통지 예외	〈신 설〉	당일통지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심사·심판청구 등을 기한 내 제기하지 못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지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1년 유예 (‘26.1.1. → ‘27.1.1.)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1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구분	세율(%)			
	과세표준(억원)	증진	한별	개정안
법인세율 환원	~2	10	9	10
	2~200	20	19	20
	200~3,000	22	21	22
	3,000~	25	24	25

코스피*

세율(%) 0% → 0.05%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세율(%) 0.15% → 0.20%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

(보유금액) 50억원 → 10억원

종목당 50억원 → 종목당 10억원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세율(%)

과표 1조원 이하: 한별 0.5%, 개정안 0.5%

과표 1조원 초과: 한별 0.5%, 개정안 1.0%

과세표준(조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합리화

취득가액 초과분: 과세*

취득가액 내 감액배당: 비과세**

(배당소득)

감액배당 전
양도차익

감액배당 후
양도차익

양도가액

양도가액

조정
취득
가액

(양도소득)

* 대주주에게 한하여 배당소득세 과세
**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 내 감액배당은 한별과 동일하게 배당소득 과세없이 취득가액만 조정

2 과세체계 합리화

한시적 지원 종료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한글 특례 등 적용기한 종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 (내용)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 <table border="1"> <caption>과세표준별 법인세율 변화</caption> <thead> <tr> <th>과세표준(억원)</th> <th>현행 (%)</th> <th>개정안 (%)</th> </tr> </thead> <tbody> <tr> <td>과표 20억원 이하</td> <td>9%</td> <td>9%</td> </tr> <tr> <td>과표 20억원 초과</td> <td>12%</td> <td>15%</td> </tr> </tbody> </table>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과세표준(억원)	현행 (%)	개정안 (%)	과표 20억원 이하	9%	9%	과표 20억원 초과	12%	15%
과세표준(억원)	현행 (%)	개정안 (%)								
과표 20억원 이하	9%	9%								
과표 20억원 초과	12%	15%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거주자가 이민등으로 국외전출 시 국외전출일에 양도소득세 과세 (현행) (개정안)									
우회담핑 과세 범위 확대	담핑물품을 제3국에서 경매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낸 후 담핑물품으로 조합·완성 시 담핑 과세대상에 추가									

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 미제출 시 또는 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2년 내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한 경우, 감치 실익이 없거나 영도담보권자등이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등 감치 신청 제외

